

의안 번호	2464	<b>【한국지방세연구원 2026년 출연금 동의를 건】</b> <b>심사보고서</b>
----------	------	---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. 8. 22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8. 22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9. 5.(금)

## 2. 제안설명 요지 (행정지원국장 노선숙)

### 가. 제안이유

-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어 2026년도 울산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세제 개편,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·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 지급
-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: 6,669천원
- 산출기준
  - 가)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.2/10,000
  - 2024년도 보통세 세입징수액 55,574,601천원 × 1.2/10,000
- ※ 출연비율 인하  
: (2020년 이전) 1만분의 1.5 ⇒ (2021년) 1만분의 1.3 ⇒ (2022년 이후) 1만분의 1.2  
\* 출연비율 인하 예정(1만분의 1.2→1만분의 1.0), 관련 법령 '25년 말 개정 예정

### 다. 근거법규
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
### **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이명주)**

- 본 동의안은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라 2026년도에 구가 부담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6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, 출연금 반영은 적절하다고 사료됨.

### **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# 근거법규

## 지방세기본법

- 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## 지방재정법
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 지방세기본법 시행령

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

1. 1만분의 1.2

2. 1만분의 0.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

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.

1.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

2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·평가

3. 지방세의 연구·홍보

4.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

5.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

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